



# 보험회사의 혁신기술 활용을 둘러싼 미국의 보험감독정책 이슈

정인영 연구원

보험회사의 혁신기술 활용은 소비자 편익 증대, 보험회사의 운영비용 절감과 같은 장점이 있지만, 요율의 불공정성, 개인정보 침해, 규제 사각지대 등 다양한 잠재적 위험이 존재함. 이에 미국 보험감독당국은 새로운 기술 활용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및 보험회사의 혁신활동을 저해하는 현행 규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 및 감독조치를 취하고 있음. 신기술 활용과 관련한 주요 감독정책 이슈로는 (1) 언더라이팅 방법론 검증, (2) 신상품 승인(규제샌드박스), (3) 특별이익 제공 금지, (4) 사이버보안 등이 있음

■ 최근 보험회사는 모바일앱,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드론 등 혁신기술을 상품 개발, 마케팅, 위험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운영 개선 및 소비자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혁신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보험계약인수 과정에서의 정확도 향상, 위험 세분화된 보험료 책정, 비용 절감, 리스크 상시 점검, 맞춤형 상품 제공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음
- 소비자는 각 개인의 위험에 기초한 보험료 책정 및 맞춤형 상품 선택, 보험가입 간소화, 상품 선택폭 확대 등의 편익을 누릴 수 있음

■ 이와 같은 보험회사의 신기술 활용에 따른 장점 이면에는 ① 요율의 불공정성, ② 개인정보 침해, ③ 규제 사각지대 등 다양한 잠재적 위험이 존재함<sup>1)</sup>

- AI 기술을 활용하여 보험요율을 산출하는 경우 인종, 성별 등과 같이 각 주(州) 보험감독청이 요율산출 시 금지하고 있는 항목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요율산출 과정에서 사용된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제기됨
  - 계약자의 구독 잡지, 상품구매 내역 등은 주 보험감독청에서 요율산출 시 반영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활용될 수 있으나, 인종, 성별 등 금지항목에 대한 대용변수(Proxy) 역할을 할 수 있음
  - AI 기술을 통해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원에서 계약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위험도를

1) GAO(2019. 6), "Benefits and Challenges Presented by Innovative Uses of Technology"

- 판단하는 과정에서 해당 데이터의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음
- 보험회사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소비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경우 개인 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으며, 수집한 정보의 소유권이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중 어디로 귀속되는지도 논란이 됨
    -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텔레매틱스 장치를 사용하여 보험계약자의 자동차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 전환 시 다른 보험회사로 데이터를 가져갈 권리가 있는지 또는 데이터가 첫 번째 보험회사에 속하는 지가 불분명함
  - 일부 인슈어테크사의 경우 비인가 보험회사(Non-admitted Insurers)<sup>2)</sup>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함에 따라 규제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음
    - 비인가 보험회사는 일반적인 보험회사와 달리 각 주에서 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파산 시 주 보증기금(State Guaranty Fund) 적용 대상에서 배제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표 1〉 혁신기술 활용에 따른 보험회사와 소비자의 잠재적 편익 및 리스크

구분 (기술적용 분야)	보험회사		소비자	
	잠재적 편익	잠재적 리스크	잠재적 편익	잠재적 리스크
보험료 산출 및 리스크 평가	계약심사 정확도 증진, 세분화된 보험료 책정	데이터 및 모형 검증 난해	각 개인의 위험에 기초한 보험료 산정	데이터 정확성 의문, 리스크풀링(Risk Pooling) 감소
소비자 보호	-	개인정보 누출	-	개인정보 침해
사업운영	비용 절감, 리스크 상시 점검	기존시스템 연계	-	-
상품	맞춤형 상품 제공	-	편의성 증대, 소비자 선택폭 확대	-

자료: GAO(2019. 6), “Benefits and Challenges Presented by Innovative Uses of Technology”

■ 미국 보험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혁신기술 활용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및 보험회사의 혁신활동을 저해하는 현행 규제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 및 감독조치들을 취하고 있음

- 미국 보험감독자협의회(NAIC)는 인슈어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2017년 “혁신기술 대책 위원회(Innovation and Technology Task Force)”를 조직하고 운영 중에 있음<sup>3)</sup>

2) 미국에서 일반적인 보험회사는 해당(Domicile) 주 정부로부터 면허를 취득하고 주법에 의해 규제를 받아야 하지만, 비인가 보험회사의 경우 해당 주에서 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고 지급여력을 제외한 거래에 관련된 주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음. 주 정부는 비인가보험회사의 거래에 참여하는 브로커들을 규제함. 비인가 보험회사는 주로 리스크의 특성상 표준시장에서 인수가 불가능하거나 거절된 경우 이에 대한 보험담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잉여시장 보험회사(Excess and Surplus Lines Insurers)로도 불림

3) Reuter(2019. 8. 28), “Interview: How insurance tech challenges regulation to keep pace in U.S.”

- 보험산업 신기술 활용과 관련한 주요 감독정책 이슈로는 (1) 언더라이팅 방법론 검증, (2) 신상품 승인, (3) 특별이익제공금지법(Anti-rebating Laws), (4)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등이 있음
- [언더라이팅 방법론 검증] 주 감독당국은 보험회사들의 혁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언더라이팅 방법론 및 효율산출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어 모범규준 마련 및 특정 데이터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함
  - 각 주 감독기관이 혁신기술을 활용한 개별보험회사의 다양한 언더라이팅 방법론 및 효율산출모형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2019년 NAIC는 보험회사의 예측분석모형 검증을 위한 모범규준 초안을 발표함<sup>4)</sup>
  - 보험회사들이 마케팅, 효율산정, 언더라이팅,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새로운 데이터 활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일부 주에서는 효율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근거로 특정 데이터 사용을 제한함<sup>5)</sup>
    - 뉴욕 주와 메릴랜드 주에서는 자동차 보험료 산정 시 직업이나 교육수준 반영을 금지하며, 플로리다 주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이나 장애보험 효율 산정 시 유전자 정보 활용을 제한함
    - 메릴랜드 주는 가계보험 효율 산정 시 혼인 여부, 배우자 사망 여부 반영을 금지시킴
- [신상품 승인] 현행 규제가 기술혁신을 지연시킨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sup>6)</sup>, 보험회사의 혁신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상품 출시 관련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
  - 미 보험협회(American Insurance Association)는 2017년 12월 NAIC에 보험혁신규제 변경·면제법(Insurance Innovation Regulatory Variance or Waiver Act)을 제안함<sup>7)</sup>
    - 동 법안에는 신기술이 적용된 상품 및 서비스 출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규제와 관련하여 주(州) 감독기관이 이를 변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신기술을 적용한 상품을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규제샌드박스에 대해서 각 주별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음<sup>8)</sup>

4) Casualty Actuarial and Statistical (C) Task Force(2019. 7. 24), "Exposure of Sections 7/8 of the Best Practices for Regulatory Review of Predictive Analytics White Paper"

5) National Law Review(2019. 7. 20), "Regulatory Response to Insurance Innovation"

6) 보험상품 신고 및 승인 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데, 기술지향 상품의 경우 이 같이 긴 상품승인 절차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보험회사가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상품을 신속하게 개발하였으나, 출시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신고승인 완료 전에 쓸모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GAO 2019. 6)

7) American Insurance Association(2017), "Proposed Model Law - Insurance Innovation Regulatory Variance or Waiver Act"

8) (찬성) 애리조나, 유타, 버몬트, 와이오밍 주 등은 혁신적인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테스트가 가능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반대) 코네티컷, 일리노이, 위스콘신 주 등은 현행 규제체계가 보험회사의 혁신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없으므로 해당 제도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National Law Review 2019. 7. 20)

- [특별이익 제공 금지] 보험업계에서는 혁신기술 활용 저해요소 중 하나로 리베이트금지법(Anti-Rebating Laws)<sup>9)</sup>을 지목하고 감독당국에 대해 이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안전주행에 도움을 주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텔레매틱스 장치를 무료 제공 시, 보험상품 구매 유도 행위로 간주되어 리베이트금지법 위반소지가 있음 - 즉, 보험업계는 리베이트금지법의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보험회사가 특정 기술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모두에 도움이 되는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함
  - 현재 뉴욕 주의 경우 25달러를 초과하는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있으나<sup>10)</sup>, 올해 1월과 2월 자동차보험에 한해 리베이트금지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NY AB 3834, NY SB 3497)이 상정되어 있음<sup>11)</sup>
- [사이버보안] 보험회사가 활용하는 보험계약자에 관한 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안이 제정되거나 추진 중에 있음
  - NAIC는 2017년 데이터 보안 모델법(Insurance Data Security Model Law)을 승인하고, 각 주가 이에 근거한 법안을 도입하고 보험회사들이 사이버보안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추진함
    - 2018년과 2019년에 미시간, 오하이오, 미시시피, 앨라배마 주가 NAIC 모델법에 근거한 법안을 채택했으며, 타 주(州)의 경우도 해당 법안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음
- 국내에서도 보험회사 업무영역에 신기술을 접목하는 과정에서의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감독정책 대응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kiri**

9) 과거 미국에서는 고객의 보험가입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보험료 할인이나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보편적 현상이었으나, 보험료 인상, 불공정거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1887년 메사추세츠 주에서 리베이트 금지법이 최초로 제정된 이후 다른 주로 확산됨(김선정(2009), 「보험모집상 특별이익제공 금지에 관한 검토」, 『경영법률』, vol. 20, no. 1)

10) New York Consolidated Laws, Insurance Law - ISC § 2324. Rebating and discrimination

11) LEXOLOGY(2019. 3. 21), "New York Considering Exception to Anti-Rebating Law that Has Been a Speed Bump for Many Insurtechs"